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9. 24 선고 2019가단11362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2019. 8. 20.

판결 선고2019. 9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53,990,485원 및 그 중 87,241,437원에 대하여 2019. 2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2019. 6. 11.

소일부취하서가 제출됨)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상근

별지